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보험대책

글 - 노동일
상생화재 재물보험팀 과장



인명사고를 방지하는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는 것이지만,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적정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주요한 대책의 하나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현대인은 고도화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신규 업종이 갈수록 다양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드나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커,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씨랜드 화재사고,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의 대형사고는 우리 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행보에 큰 걸림돌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에 팽배했던 안전불감증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는 주요원인이 ‘방화’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기의식 결여, 인간존엄성 경시풍조 등을 다시금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대응 방법의 미숙함은 외형성장에 편중되어 왔던 우리 사회의 위험관리 부재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방재설비의 강화, 관리감독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왔으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그 한계가 드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불특정 다수가 상주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인명사고를 동반한다. 제일 이상적인 방법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는 것이지만,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적정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주요한 대책의 하나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주요 위험

다중이용시설은 그 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최우선 순위의 위험(또는 손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에 적합한 대응방안 모색과 함께, 방재설비의 설치, 점검, 관리, 교육 등의 전반적인 위험관리활동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일반적인 다중이용시설의 대형사고에 대한 주요 사고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적 요인

- (1) 기업주(영업주) 및 이용자의 안전불감증
 - 화재 등의 위험에 대한 기업주(영업주)의 안전의식 결여
 - 비상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난유도 등의 관리 · 교육 활동 미비
 - 소방시설 등 방재관련 시설의 투자 미비

- (2) 화재의 조기발견 신고, 초기 진화 등 대응조치 미흡
 - 방재시설의 관리미비 및 화재 발견시 초기 대응의 미숙
 - 비상연락망의 확보미비 및 비상훈련 등 의 미 실시

나. 물적 요인

- (1) 가연성 실내장식물의 다양 설치로 화재시

급격한 연소 확대

-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대피통로 탐색 곤란
- 방음효과를 위한 가연성 물질 설치로 화재 발생시 급격한 연소확대 및 유독성 가스 누출

(2) 피난 · 방화시설 유지관리 불량

- 시설 구조의 빈번한 임의 용도 변경 및 구조 변경
- 방화구획, 방화문 불량 또는 고정개방으로 화재차단 역할 부족
- 계단, 복도, 비상구 등에 방범창이나 특수 잠금장치의 설치로 인한 피난로 차단

한편,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업종인 판매시설을 살펴보면, 재래시장 등 소형 판매시설의 경우에는 좁은 통로, 과다 적재 등으로 화재 발생시 급격한 연소확대와 함께 피난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유사시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편이다. 이러한 판매시설을 용도별로 분석해보면, 의류매장과 음식점의 매장 수가 다른 점포에 비해 면적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매장의 위치를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의류매장 중에서도 아동의류가 상층부에 위치해 있어 화재시 어린이들의 피난에 문제가 있다.

화기취급소인 음식점의 위치는 대부분 지하층에 편의점식 간이음식점이 입주되어 있고, 최상층에는 전문음식점이 입주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항상 화재취약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화재 및 배상책임의 위험도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잠재위험 담보 관련 보험의 종류

가. 재산종합

이러한 시설은 조명 및 전기시설, 이동전열기 구, 식당에서의 인화성 연료의 사용, 가연성 저장품 및 포장재, 잡은 개 ·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으며, 연소 확대로 대형 화재로의 전이가 용이하다. 또한 외국의 사례로 미루어 방화의 가능성도 있으며, 저지대 및 주변에 하천이 위치한 재래시장은 집중호우 또는 홍수로 인한 풍수재의 위험도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ALL RISKS를 담보하는 것으로 화재, 폭발, 도난, 파손, 잡위험, 풍수재 등 대부분의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특수 건물의 경우 신체배상책임까지 담보하기 때문에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의 경우와 같이 배상책임에 대한 일정 부분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기계보험

이러한 시설은 제조업체와는 달리 기계사고 위험은 낮다. 다만, 각 이용시설마다 냉난방을 위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 소액의 보험료로 주요 기계시설을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 기업휴지보험

화재시 점포 폐쇄로 유휴인력의 증가로 인한

고정비의 계속적 지출, 재건축 또는 보수공사 기간 동안의 매출이익 감소, 기업 이미지 저하 등 화재위험이 높음에 따라 화재에 의한 기업 휴지위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 판매시설인 경우 매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휴지손실을 산정하기 용이한 반면, 재래시장의 경우 위험도가 높을 뿐 아니라 손실액 산정에도 어려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 측면에서는 기업 휴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사고 발생 후 보험 미부보로 인한 이중의 경제적 손실을 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대부분의 선진국 대형 판매시설은 기업 휴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라. 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시설은 업종의 특성상 제3자에 대한 인적·물적 배상책임의 위험이 높으며 화재·폭발사고, 붕괴사고, 매장 내에서의 지게차 사용 등에 의한 배상책임의 위험도 크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류 및 음식류의 불량에 의한 인적 피해의 법률적인 배상책임위험이 보통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계식 주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증가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시 균중의 이동성향 및 대피에 의한 연습 등 충분한 안전 대책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배상책임위험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재물보험에서의 신체배상책임담보는

PERIL이 화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일반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구내치료비 담보 등의 보험을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보험가입이라 할 수 있다.

마.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배달 서비스에 의한 차량사고 또는 중량물 운반에 따른 각종 사고, 매장 내 창고에서의 운반사고, 사다리를 이용한 시설물의 설치나 보수시의 사고,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의한 사고, 파트타임이나 계절적 인원 사용에 따른 업무미숙에 의한 사고, 기타 일반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며 그 수준은 보통이다.

단, 산재보험의 보상범위가 매우 적기 때문에 사용자배상책임 가입을 통한 대형사고 시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도난보험

매장 내 많은 현금 및 보석류 등 고가의 상품은 재물보험에 담보되지 않는 목적물이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도난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입시에는 시건장치 등의 안전장치, 고정 전문경비원의 배치 상태, 도난감시 시스템 또는 경보설비 유무, 개인소지품 보관소 등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도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사전 사고발생 예방에 가장 좋은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표 1〉 잠재위험 평가표

	위험의 종류	위험도			비고
		낮음	보통	높음	
재산 손실	화재				재래시장은 매우 높음
	폭발				
	태풍	■■■			지역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름
	수재				
	자진	■■			
	도난				
	소요·노동쟁의	■■			
	붕괴·침강위험	■■			재래시장 높음
	기계적·전기적 사고				
이익 손실	스프링클러 누출				
	화재·폭발로 인한 기업휴지				
	기계적·전기적 사고로 인한 기업휴지	■■■			
	원로 공급중단 등으로 인한 기업휴지	■■■			
배상 손실	시설물 소유·관리에 따른 배상책임				이용시설에 따라 다름
	생산물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종업원의 인적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			시설물 보수시 높아짐
	주차장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기계식 주차일 경우 높음

4. 맷음말

앞에서 언급한 판매시설 이외에도 지하철, 병원, 회관, 공연장 등 다중이 운집 또는 이용하는 시설물은 사고 발생시 대형 참사로 번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안전의식의 고취 및 관리가 필요하다. 사고 발생시 다중시설의 사업주에 법률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피해가 큰 사람은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다. 따라서 이용자 본인이 위험대책을 스스로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가능한 한 위험업소의 출입을 피하고 출입시 비상 대피가 가능한 쪽을 눈여겨보며, 유독가스를 최대한 흡입하지 않는 지식을 습득함과 아울러 주위 사람이 불장난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방관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다중시설에 대한 위험관리 법령의 강화 및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시행을 강화토록 하여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민영보험사가 취급하기 힘든 부분에 대한 국영보험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www)